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82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2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취지 기재 '2019. 5. 10.'은 오기로 보인다(갑 제4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산업기계부품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1. 2. 19. 발행주식 총수 10,000주(1주 금액 10,000원, 자본금 1억 원), 주주명부상 주주 원고(1,500주, 15%), C(6,500주, 65%), D(1,000주, 10%, E(250주, 2.5%), F(200주, 2%), G(250주, 2.5%), H(50주, 0.5%), I(250주, 2.5%)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출자주식	1992년말	2000년말	2002년말	2006년말	2008년말	2017년말
원고	1,500	1,500	1,500	3,500	3,500	3,500	6,500
C	6,500	6,500	3,500	–	–	–	–
D	1,000	1,000	1,000	–	–	–	–
E	250	1,000	1,000	1,000	–	–	–
F	200	–	–	–	–	–	–
G	250	–	–	–	–	–	–
H	50	–	–	–	–	–	–
I	250	–	–	–	–	–	–
J	–	–	3,000	–	2,500	3,500	3,500
K	–	–	–	3,000	2,500	1,500	–
L	–	–	–	1,500	1,500	1,500	–
M	–	–	–	1,000	–	–	–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단위:주)

다. 피고는 2019. 5. 13. '원고가 특수관계인 J(자)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지분율 70%를 소유하던 중 2017. 12. 31. K 및 L로부터 주식 3,000주(= K 명의 주식 1,500주 + L 명의 주식 1,5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100%(10,00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 지분율이 30%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장부가액 607,187,500원에 추가로 취득한 과점주주 지분율(3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182,15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4,822,390원(가산세 1,179,2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100%의 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였고, 다만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지인,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등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수차례의 주식 양수도를 거쳐 2017년 말 K, L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고(J에 대하여는 3,500주 증여) 주주명부 등에 원고 명의로 65%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실질에 맞게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로 인해 원고의 실질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로 인해 원고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K, L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2017년 말 위 각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주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당시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두어야 하였던 까닭에 주주명부 상 원고 외 7인을 위 1.의 나. 기재 [표]와 같이 형식상 등재하였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E은 원고의 매형, D는 원고의 당시 배우자, G는 원고의 동생, F, C, H, I은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N의 직원이었다.

나) 2000년경 주주명부에 기재된 J는 원고의 자녀이며, 2002년경 주주명부에 기재된 K, L, M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2002. 1. 14. K과 사이에 주식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1995. 9.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L는 2002년경 기존의 차명주주 직원인 C이 퇴사함에 따라 C 명의 주식 중 1,500주를 양수하였다가 2017년경 위 주식을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식양수도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결정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등을 포함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K, L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정황은 없다.

바) 원고는 2017. 12.경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실질에 맞게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2017. 12.경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2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끝.